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

제정 1991년 4월 8일 규칙 제 142호 일부개정 2014년 9월 5일 의회규칙 제2014-11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5년 1월 30일 의회규칙 제 15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4, 9, 5〉
- 제2조(발급대상) 오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신분증(이하 "신분증"이라 한다)의 발급대상은 현직 의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14. 9. 5〉

[제목개정 2014, 9, 5]

- 제3조(규격·제식 및 색상)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 -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 의회마크를 표기하여 제작한다. 〈개정 2014. 9. 5〉

[제목개정 2014, 9, 5]

제4조(발급권자) 신분증은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 〈개정 2014. 9. 5〉

[제목개정 2014, 9, 5]

- **제5조(발급 및 재발급)**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. 〈개정 2014. 9. 5〉
 -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 9. 5]

제6조(회수)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

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

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야 한다.

[제목개정 2014. 9. 5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4. 9. 5 의회규칙 제2014-11호〉

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1. 30 의회규칙 제15호〉

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15. 1. 30〉

의원신분증(제3조 관련)



(주)

- 1. 사진의 규격 등
 - 가. 사진창(가로×세로 = 24×30mm)
 - 나. 사진인쇄(전면) : 칼라전사
 - 다. 신상정보(전 후면) : 먹 전사
- 2. 원단은 아이에스오(ISO) 규격의 피브이씨(PVC) 카드로 한다. 가. 규격(가로×세로×두께 = 54×85.6×0.8mm)
- 3. 발급번호는 발급 년도에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.
- 4.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바 탕 : 흰색
 - 나. 모 양 : 청색. 하늘색
 - 다. 의회휘장 배경바탕 : 금색(또는 백색)
- 5.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.
- 6.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정장 상의에 매달 수 있게 한다.

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

[별지 제1호서식]

신분증발급대장

H	
垣	
전	
₹	
雪	
型	
재발급사유	
화수여부	
신규재발급	
주민등록번호	
呼	
2일 交	
발급선월일	
신분증번호	
市	
결과	
Kin	

[별지 제2호서식]

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

- 1. 성 명
- 2. 주민등록번호
- 3. 신 분 증 번 호
- 4. 재발급신청사유

첨부 : 사진 2 매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. . .

신청인 인

190mm×268mm